# 회의록

● 홈페이지 게시용

| | |
|---|---|
| 제 목 | 2021년 2차 운영위원회 |
| 일 시 | 2021년 9월 7일(화) 15:00 |
| 장 소 | 온라인(Zoom) |
| 작 성 자 | 총괄기획팀장 |

성원

| 번호 | 이름 | 소속 및 직위 | 참석 |
|---|---|---|---|
| 1 | 정경섭 | 마포 민중의집 대표 | o |
| 2 | 김태현 |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| o |
| 3 | 이팔형 | 마포구청 일자리지원과 과장 | o |
| 4 | 정윤각 | 공인노무사 | o |
| 5 | 홍진주 |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센터장 | o |
| 6 | 윤성일 | (사)마포공동체경제 이사장 | o |
| 7 | 이선형 |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| o |
| 8 | 신태중 |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| x |
| 9 | 박진국 | 공공운수노조 홍익대분회 분회장 | o |
| 10 | 박홍섭 | 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| o |
| 11 | 권정환 |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포구지부 사무국장 | o |

내 용

1. 보고안건
   1-1. 2021년 상반기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 보고
   - 원안 보고
2. 의결안건
   2-1.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취업규칙 개정
   - 원안 통과

<신구대비표>

| 원안 | 개정안 | 개정이유 |
| --- | --- | --- |
| **제33조(경조사휴가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.<br>3. 배우자의 출산: 5일 | **제33조(경조사휴가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.<br>3. 배우자의 출산: 10일 | 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1 제1항 '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<br>- 마포구 지도점검(7/23)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 |
| **제31조(연차휴가의 사용)**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. 다만,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**제31조(연차휴가의 사용)** ①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 | - 2020년도 민간위탁 노동조합 단체협약 사항으로, 이에 맞게 취업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|

| | |
|---|---|
| | 3. 기타안건<br>- 운영위원회 안건지에 전차회의 결과 보고하기로 함<br>-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협업 사업 추진하기로 함<br>- 스토리와 내용이 담긴 사업성과를 소식지에 담기로 함<br><br><줌회의 사진><br><br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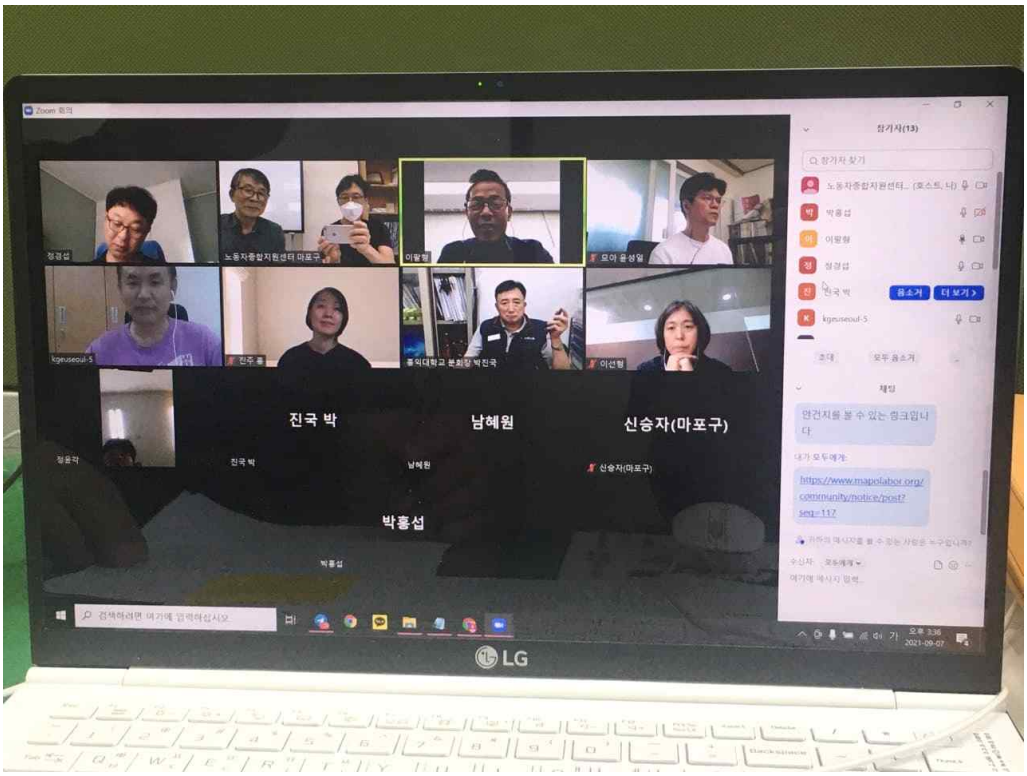 <br> |
| 첨 부 | 1. 2차 운영위원회 안건지<br>2.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취업규칙 |

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